산업통상자원부
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도자료

희망의 새시대
http://www.motie.go.kr

2014년 4월 12일(토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산업부 무역투자실 총괄기획과 안병화 과장(044-203-4120), 김성철 사무관(4123)
산업부 무역투자실 활용촉진과 신동준 과장(044-203-4150), 박재탁 사무관(4153)
관세청 FTA집행기획담당관 제영광 과장(042-481-3201), 정재호 사무관(3211)

자유무역협정(FTA) 활용 손톱 밑 가시 제거로 FTA관세특혜 열매를 더 많은 기업에게 제공

- 국가별 품목분류 상이 시 수입국 품목분류 기재를 허용, 유럽연합(EU) 인증수출자 번호 확인을 위해 EU측에 온라인 정보제공 요청키로-

1 이제부터 우리나라와 수입국의 상품에 대한 품목분류가 상이할 경우 수입국 품목분류를 기재하실 수 있습니다.

○ **(애로사항)**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간 품목분류(HS CODE)가 달라 자유무역협정(FTA) 특혜관세 혜택을 받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.

- 사후 검증 시 품목분류 상이로 인해 허위원산지 증명서 작성으로 간주되어 벌칙이 적용된 사례도 발생.

○ **(해소방안)** 수입국의 품목분류 확인 서류가 있는 경우 **수입국의 품목분류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허용,** 홍보 및 정보제공도 강화.

- (지침마련) 수입국의 품목분류 확인 서류가 있는 경우 수입국의 품목분류로 원산지증명서(C/O) 발급을 허용하는 지침 마련.

* 품목분류(HS CODE) 상이 시 처리 지침(관세청, '14. 3. 31.)

- (홍보강화) 위 지침 내용을 전국 160여개 FTA 지원기관에 통보, 'FTA 이행 지침 20선'을 전자책(e-book)으로 제작·배포.

* HS번호 상이 시 C/O 발급 지침 등 대외 홍보가 필요한 관세청 이행지침들을 발췌하여 홍보매뉴얼로 제작 배포('14. 4. 4.)

- (정보제공 강화) HS번호 상이내역을 DB화하여 홈페이지에 제공하는 한편 HS분류사례 조회 시스템과의 연계를 확대.

* 관세청 FTA 포털(ftp.customs.go.kr)에 품목분류 상이 DB 게재('14. 4월)

** 관세청 "HS 세계정보시스템"상 FTA 상대국의 HS분류사례 조회시스템 제공 (현재 미국, 유럽연합, 일본, 대만 → 세계관세기구(WCO), 캐나다, 중국, ASEAN 등 연계확대)

- (분쟁대응 지원 등) HS 관련 분쟁 시 관세당국 간 협의 등을 통한 대응체계 구축, 수입국 품목분류 확인서 확보 등을 지원.

* 수입상대국의 사전품목분류 결정서, 품목분류 확인서 확보 사례, 확보방법, 대응방안 등 소개 및 필요시 수입국 품목분류 신청서 작성(영어) 지원(산업부)

2 유럽연합(EU) 인증수출자 번호 확인이 가능하도록 EU측에 온라인 인증수출자 정보제공 시스템을 구축을 요청·협의해 나가겠습니다.

○ (애로사항) 한·EU FTA 인증수출자 제도는 다른 FTA와 달리 특혜관세 혜택적용(6천유로 초과 수출입 시)을 위한 필수사항이나, 수입자가 EU인증수출자 번호의 오류여부를 확인하기 곤란.

- EU기업의 인증수출자 번호 오류로 인해 관세추징 및 가산세를 부과받는 사례 발생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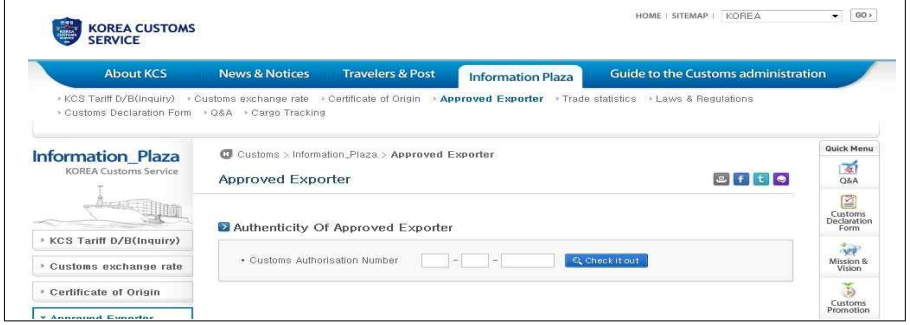
○ (해소방안) EU측에 인증수출자 번호를 온라인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 요구하는 한편, EU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 교육 강화.

- (온라인 시스템 구축) FTA 이행협의회 또는 세관 간 협력회의 등을 통해 EU측에 인증수출자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요구.

* 한국의 인증수출자는 관세청 영문 홈페이지에서 사실 진위 여부 확인 가능

- (인증수출자 번호체계 확인) EU측 시스템 구축 전까지 EU 인증수출자 번호체계 관련 정보제공 및 교육을 강화하는 한편, 수입신고 시 세관에서 EU측 인증수출자 번호체계 오류여부 점검.

<참고> 한국의 인증수출자 조회 사이트 (관세청 영문페이지) >

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윤상직)는 '14. 4. 11.(금) 오후 4시30분 11개 관계부처 및 12개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민관합동 협의체인 「제9차 FTA 활용촉진협의회」를 무역협회 51층 대회의실에서 개최하였음.

* 산업부 무역투자실장 주재, 관세청·중기청 차장 등 관계부처 실국장급 15명 및 무역협회, KOTRA, 수출입은행 등 유관기관 부기관장급 13명이 참석

□ 이번 회의에서는 FTA 추진동향 및 계획, 국가별 품목분류 상이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 방안, EU 인증수출자 번호 관련 수입기업 애로 해소 방안 등을 논의.

○ 산업통상자원부는「FTA 추진 동향 및 향후 계획」,「EU 인증수출자 번호 관련 수입기업 애로 해소 방안」을 보고.

- 한·중 FTA를 우선 추진하면서 동아시아 역내 지역경제통합에도 적극 대응해 나가는 한편,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(TPP)은 예비 양자협의 결과 및 국내 영향분석 등을 토대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임을 설명.
- 수입신고 시 EU 인증수출자 번호에 대한 오류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EU측에 온라인 인증수출자 시스템 구축을 적극 요구하고, 수입자 대상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힘.

○ 관세청은「국가별 품목분류 상이에 따른 기업애로 해소 방안」을 보고.

- 수입국의 품목분류 확인 서류가 있는 경우 수입국의 품목분류로 원산지증명서 발급을 허용하고 관련 정보제공을 강화하여 기업의 애로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힘.

□ 권평오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"중소기업이 FTA활용 시 어려움을 느끼는 애로에 대해 관계부처와 함께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"이라고 밝혔음.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국내대책관실 안병화 총괄기획과장(☎ 044-203-412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참고1 품목분류 상이 시 처리지침

□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과의 HS번호 상이시 원산지증명서 발급요령

○ FTA 특혜원산지증명서 발급시에 우리나라와 수입국간 품목분류가 달리 운영되고 있는 경우 수입신고필증 등 수입국의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서류*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(관세청 또는 상공회의소)에 제출하면 수입국의 HS번호를 기재하여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.

* 수입신고필증, 품목번호 확인서, 사전심사결정서(advance ruling) 등 수입당사국 정부의 당해 품목에 대한 공식적 의견서 중 하나를 제시하면 됩니다.

○ 원산지증명서 자율발급의 경우(미국, EU 등)에도 동 원칙이 적용되어 HS확인이 가능한 서류를 갖춘 경우 사후검증이 실시되더라도 허위 원산지증명서 작성 등에 대한 벌칙이 적용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□ 우리나라와 협정상대국과의 HS번호 상이시 인증수출자 인증 요령

○ 품목별 인증수출자 인증은 우리나라의 HS6단위를 기준으로 인증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수입국의 HS번호가 상이한 경우에 수입국의 HS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인증여부가 부합되는 경우 수입국의 HS번호로 추가 인증 처리할 수 있습니다.

□ 기타 HS번호 상이에 대한 중소기업 우려에 대한 홍보

○ 수출물품에 대한 간이정액 환급을 받고 있는 기업의 경우 원산지증명서상의 HS번호와 관계없이 수출신고상의 HS번호에 따라 간이정액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. 수출신고서와 원산지증명서의 HS번호는 다를 수 있으니 업무에 착오가 없도록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.

MOTIE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참고2 **EU 회원국 인증수출자 번호 체계**

□ 인증번호체계 : 국가명(/) 세관번호(/) 일련번호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'/'가 예시에 사용된 경우 코드의 일부로 인정

국 가 명	인증코드 예시	인증코드 체계	비 고
벨기에(Belgium)	BE 74	국가(2)/인증번호(1~4)	
불가리아(Bulgaria)	BG/1223/009/08	국가(2)/세관부호(4)/인증번호(3)/인증연도(2)	
체코(Czech Republic)	CZ/02/0001/04	국가(2)/세관부호(01-08)/인증번호(4)/연도(2)	
덴마크(Denmark)	DK/51/04/237/00638	국가(2)/세관부호(2)/연도(2)/237/인증번호(5)	※ 2가지 형식 모두 유효
	DK/04/000638	국가(2)/연도(2)/인증번호(6)	
독일(Germany)	DE/4711/EA/0007	국가(2)/세관부호(4)/EA/인증번호(4)	
에스토니아(Estonia)	EE/001/2001	국가(2)/인증번호(3)/인증연도(4)	
아일랜드(Ireland)	IE/05/06	국가(2)/인증번호(2)/인증연도(2)	
그리스(Greece)	GR/01/1234/2004	국가(2)/세관부호(1-10)/인증번호(4)/인증연도(4)	
스페인(Spain)	ES/28/0001/98	국가(2)/지역코드(2)/인증번호(4)/인증연도(2)	
프랑스(France)	FR 003160/0025	국가(2)/세관부호(6)/인증번호(4)	
이태리(Italy)	IT/001/RM1/06	국가(2)/인증번호(3)/지역번호(2)+digit number(1) or (2)/인증연도(2)	RM : Roma MI : Milano NA : Napoli 그 외 지역
	IT/001/RM2/06		
	IT/001/BO/11	국가(2)/인증번호(3)/지역번호(2)/인증연도(2)	
사이프러스(Chyprus)	CY/NIC/000	국가(2)/세관부서명(3)/일련번호(3)	
라트비아(Latvia)	LV/100/2006	국가(2)/인증번호(1-3)/인증연도(4)	
리투아니아(Lithuania)	LT/VMO/011	국가(2)/세관관서명(3,대문자)/인증번호(3)	
룩셈부르크(Luxembourg)	LU/ORDL/256	국가(2)/ORDL/인증번호(1-500)또는(501-999) (ORDL : Origine, Direction des Douanes et Accises)	1-500 : national 501-999 : single
헝가리(Hungary)	HU123450N8000000000	국가(2)/세관부호(5)/0/level코드(N or E) /8(마지막연도)/인증번호(9)	N : National E : EU Community
말타(Malta)	MT/D/000	국가(2)/D(Dwana)/인증번호(3)	
네덜란드(Netherland)	NL/361/02/1234	국가(2)/세관관서(3)/인증연도(2)/인증일련번호(3~4)	
오스트리아(Austria)	AT/100/015	국가(2)/세관부호(3)/인증번호(3)	
폴란드(Poland)	PL/042010/0001	국가(2)/세관관서(6)/인증번호(4)	
포르투칼(Portugal)	PT/000/P	국가(2)/인증번호(3)/인증지역번호(P or L)	P : Porto L : Lisboa
루마니아(Romania)	RO/DRVBV/025	국가(2)/세관관서명(5,대문자)/인증번호(3)	
슬로베니아(Slovenia)	SI/123/03	국가(2)/인증번호(3)/인증연도(2)	
슬로바키아 (Slovak Republic)	SK/1050/010/05	국가(2)/세관관서(4)/인증번호(3)/인증연도(2)	
핀란드(Finland)	FI/50/110 *FI/8/86	국가(2)/인증번호/지역세관번호(3) *국가(2)/인증번호/Åland지역은2자리	
스웨덴(Sweden)	SE/SHF/123456	국가(2)/세관관서(3,대문자)/인증번호(6) (MO지역은 세관관서번호가 2자리로 사용됨)	
영국(United Kingdom)	GB 12345/06	국가(2)/인증번호(5)/인증연도(2)	
산마리노공화국 (Republic of San Marino)	SM/SM001/00/0000	국가(2)/세관부호(5)/인증번호(2)/최초인증연도(4)	

MOTIE
MINISTRY OF
TRADE, INDUSTRY & ENERGY